

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

- 제정 : 2020. 3. 13.
- 개정 : 2021. 12. 1.
- 개정 : 2022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본교에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핵심역량 개발 및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과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분류) 비교과 교육과정은 그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1.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: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단(평가), 멘토링, 튜터링, 클리닉, 특강, 워크숍, 학습동아리, 집중심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
2. 진로지원 프로그램: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로상담, 진로 탐색 검사, 진로캠프, 특강, 공모전,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
3. 심리상담 프로그램: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대학생활 적응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, 집단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
4. 취·창업지원 프로그램: 학생들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의입사경연대회,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, 현장실습수기 공모전, 비마엑스포, 경진대회, 전공동아리, 특강, 현장견학, 창업역량강화 캠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
5. 전공역량 연계 프로그램: 전공 학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성과와 핵심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
6. 교양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: 교양 학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성과와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
7. 기타 프로그램: 비교과 교육과정 중 위 제1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

제4조(운영)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총괄적인 운영은 본교 교육혁신원 직업기초·교양교육센터와

5-0-25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

역량교육센터에서 한다.

② 비교과 교육과정의 개별 프로그램은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며,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.

1. 비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요구분석
2. 대학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
3.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일리지 등록
4.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
5.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결과보고
6.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성과분석

③ 본 대학에 설치된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은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비교과 교육과정은 정기적(학기단위) 또는 비정기적(단기 특강 등)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⑤ 비교과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이수구분 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⑥ 본 규정 제3조에서 명시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관부서에서는 프로그램 게시 전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홍보한다.

⑦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주관부서는 매 학년도 과정별 시행 결과를 수합하여 교육혁신원 역량교육센터에 제출한다.

제5조(성과분석) 교육혁신원 역량교육센터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성과결과를 기반으로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.

제6조(타 규정과의 관계) ① 일부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칙에서 정한 졸업자격 및 학생 개인별 경력관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계의 범위 및 제한 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.

②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결과에 따라 등록된 마일리지는 졸업 시 역량인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활용의 범위 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재정) 대학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 차기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비교과 교육과정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)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의 세부 운영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